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7

발의연월일: 2008. 8. 26.

발 의 자: 박준선 · 이한성 · 유기준

안상수 · 강성천 · 정미경

홍일표 · 이인기 · 남경필

김효재 · 구본철 · 황영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 단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음.

국민투표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9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이 법에 따른 국민투표의 투표인명부는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한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노력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는 투표기술적 사유 등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국민투표의 투표권자 및 이 법에 따른 국민투표의 투표인명 부 작성 대상자에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 그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 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住民登錄票에 의하여 調査한 최근의 人口統計"를 "주민등록 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등재된 재외국민의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된 投票權者"를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 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투표권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第5條(人口의 基準) 이 法에 規定 된 人口의 基準은 住民登錄法 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의하여 調査한 최근의 人口統 計에 의한다.

第14條(投票人名簿의 작성) ①國 民投票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 마다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 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 다) · 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 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 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 域에 한한다)・邑長・面長(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 다)은 國民投票日公告일 현재 로 그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 이 된 投票權者를 投票區別로 調査하여 國民投票日公告日로 부터 5日 이내에 投票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第5條(人口의 基準)			
<u>주민등록표에</u>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			
계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등재된			
재외국민의 수			
第14條(投票人名簿의 작성) ①			

정

안

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 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 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투표 권자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 서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를 투표인명부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4조제1항).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인이 증가하여 국가의 투표관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국민투표는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의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국민투표는 1962년부터 1987년까지 헌법개정시 6번 실시하였으나, 최근 20년 동안은 실시한 적이 없으며, 국민투표는 일정한 추세 없이 정 치적 상황 등에 의해 실시되어 왔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향후 국민투표 실시횟수를 예측하여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 고가 되어 있는 자에게 국민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증가되는 투표관리비용을 미리 추정하 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단, 2008년 8월 현재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가 6만명 정도이고, 투표권자 1인당 투표관리경비가 공직선거1)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투표

1회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재정부담액은 2억원 이내일 것으로 추정된다(참고자료 참조).

4.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 팀 장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 예산분석관 최유순(02-788-4648, bce@nabo.go.kr)

5. 참고자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투표권 부여에 따른 투표관리비용(1회, 2008년 기준)

(단위: 명, 원)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중	투표권자 1인당	투표관리경비
국내거소신고자	21세 이상인 자(a)	투표관리경비(b)	(a×b)
61,337	57,698	3,000	173,000,000

- 주: 1. 법무부에 19세 이상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현황 자료가 없어 21세 이상 자료를 활용함.
 - 2. 국민투표는 전국적으로 可否만을 묻는 투표이므로 공직선거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표권자 1인당 투표관리경비를 제16대 대통령선거의 1인당 선거관리경비 3,821원보다 적은 3,000원으로 가정하여 추정함.

¹⁾ 공직선거의 1인당 선거관리경비는 제16대 대통령선거 3,821원(2002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4,693원(2004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0,705원(2006년)인데, 후보자수 및 선거구수가 많을수록 1인당 선거관리경비가 많아짐.